

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
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[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]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1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2. 제안이유

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2021. 6. 1. 개정한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권장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8개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함(안 제7조, 별표)
- 나.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의 환급 규정에 “금천베이스볼파크”를 추가함(안 제8조)
- 다.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에 “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”를 추가함(별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31조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
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
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
- 5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- 6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7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- 8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9조
- 9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
- 10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- 11)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2021.6.1. 개정된 금천베이스볼파크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적극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체육활동 권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8개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함(안 제7조, 별표)
-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의 환급 규정에 “금천베이스볼파크”를 추가 함(안 제8조)
-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에 “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”를 추가함(별표)

다. 검토결과

1)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건으로
-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에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함.

2)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규정 정비

- 지난 2021.6.1. 개정된 금천베이스볼파크는 미래의 야구선수를 꿈꾸는 유소년들과 야구동호회 및 생활체육인 등을 위한 우리구 최초의 야구 체육시설임
- 이용 주민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

사용료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은 적법 타당하며

- 사용료 감면사유 발생 시 조례 제7조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서 의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

붙임 : 1.관계법령 1부.

붙임	관계법령
-----------	-------------

지방재정법

제31조(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

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7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제23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8조의3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1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2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88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74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5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의사자·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제15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,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